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수신 전 조합원사 및 매립협회 회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조

제 목 「폐기물관리법」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1. 자원순환정책과-1516[의원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8.5.4]입니다.

2. 국회 하태경 의원실('18.5.2) 및 이주영 의원실('18.4.30)에서 각각 입법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소각시설 반입 폐기물 중 폐토사·불연물 등 매립대상 폐기물의 재위탁 허용 및 가축분뇨에서 추출된 암모니아를 폐기물 소각처리 시 약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의제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조합원사 및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불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8.5.15(화) 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 입법발의(안) 주요내용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붙임 : 환경부 의원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담당	오은석	팀장	한인성	사무국장	장기석	부이사장	진원기	이사장	박무웅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18 - 185호			(2018. 5. 10)	접수				
우	07573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66, 11층(등촌동, 우리벤처타운)							/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비공개	



환경부

환경부

보다 나은 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정부입법 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과 관련 됩니다.
2. 국회 이주영의원 ·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8.5.16.(수)까지 불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한 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1부.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흥보기획팀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자연생태정책과장, 폐자원관리과장, 자원재활용과장, 폐자원에너지과장, 푸른하늘기획과장, 기후전략과장, 환경보건정책과장, 물환경정책과장, 수도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장(자원순환연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교육기획과장),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 국무조정실장(안전환경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법제처장(사회문화법제국장), 인사혁신처장(법무감사혁신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융위원회위원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국방부장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 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양수산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병무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 산림청장(법무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행정법무담당관),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사)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장, (사)한국건설자원협회장,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이사장,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이사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전결 2018. 5. 4.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정책과-1516 (2018. 5. 4.) 접수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350 팩스번호 044-201-7351 / wlswnxkd@korea.kr / 대국민 공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29
----------	-------

발의연월일 : 2018. 4. 30.

발의자 : 이주영 · 김성찬 · 이명수

정성호 · 박덕흠 · 김규환

권석창 · 김승희 · 권성동

홍문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부터 축산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전면 육상처리 하고 있으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가 높아 축산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2014년에 가축분뇨(축산폐수)에서 추출된 암모니아를 폐기물 소각처리 시의 약품 대용으로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특허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이 신기술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을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의제하여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생활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활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94
------------	-------

발의연월일 : 2018. 5. 2.

발 의 자 : 하태경 · 강길부 · 권은희

김기선 · 김삼화 · 김중로

신보라 · 신용현 · 이동섭

이언주 · 이혜훈 · 채이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폐토사·불연물 등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에도 재위탁 금지 규정으로 인해 소각시설에 강제 투입되고 있으며, 이처럼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이 소각시설에 투입됨으로 인해 소각시설 가동정지 및 수명단축 등의 문제도 자주 발생되고 있음.

특히, 폐토사의 경우 오염도가 낮아 소각시설 투입 전에 선별하면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 가능하나 현재 모두 소각로에 투입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어 자원이 낭비되는 상황이 있으며 다이옥신 등 유해한 소각 잔재물과 혼합되어 매립되고 있어 매립지 내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상황이 있음.

그리고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토사·불연물 등에 대해 투입 전 선별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소각 폐기물 발열량 저하로 인한

소각로 적정 온도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유나 LPG 등과 같은 보조연료를 사용해야 하고 그 결과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폐토사·불연물 등 매립대상 폐기물과 혼합·배출되어 폐기물 소각처분업자에게 반입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입된 폐기물을 최종처분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반입된 폐기물을 최적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9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18항 신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매립대상 폐기물과 혼합·배출되어 폐기물 소각처분업자에게 반입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⑯ 제9항제3호 단서에 따라 폐기물 소각처분업자에게 반입된 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처분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⑧ (생 략)</p> <p>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 2. (생 략)</p> <p>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단서 신설></p> <p>4. (생 략)</p> <p>⑩ ~ ⑯ (생 략) <신 설></p>	<p>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⑧^(현행과 같음)</p> <p>⑨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다만, 매립} <u>대상 폐기물과 혼합·배출되어</u> <u>폐기물 소각처분업자에게 반</u> <u>입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u> <u>하다.</u></p> <p>4. (현행과 같음)</p> <p>⑩ ~ ⑯ (현행과 같음)</p> <p>⑯ 제9항 제3호 단서에 따라 폐기물 소각처분업자에게 반입된 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처분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다.</p>

[붙임 3]

폐기물관리법(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 ○ ○ 부 ○ ○ ○ 과 ○ ○ ○ 사무관(000-0000-0000)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폐기물관리법(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 ○ ○ 부 ○ ○ ○ 과 ○ ○ ○ 사무관(000-0000-0000)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